

과업지시서

1. 용역명: 우체국 현금 운송용역 위탁(자·과초금 및 점외365코너)

2. 위탁목적물: 현금(지폐 및 주화)

3. 위탁운송대상

가. 우체국: 220국(총괄국 24국, 소속국 196국)

나. 점외365코너: 19개소(자동화기기 20대)

※ 점외365코너 중 3개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인수

다. 세부내역: 「붙임1」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4. 용역기간: 2017. 1. 1. ~ 2018. 12. 31.(2년간)

5. 위탁운송 요일: 월요일 ~ 금요일 (토요일 및 휴일 제외)

6. 위탁운송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 총괄국(또는 모점국) ⇔ 모점국(또는 한국은행)

가. 총괄국

① 납부 전 영업일 17:30 까지 모점국으로 현금운송 위탁사항 통보

② 납부 당일 09:30 까지 인계준비 완료

나. 모점국

① 현금운송 전 영업일 18:00 까지 위탁사항을 용역업체에 요구

※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요구

② 모점국 직원이 한국은행 본·지점에 과초금 납부

다. 용역업체

① 위탁국(총괄국)에서 모점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까지 현금운송

② 모점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 납부(청구) 완료시까지 현금운송업무 대행

③ 지정된 장소 및 시간까지 안전·정확하게 성실히 운송하여야 함

※ 한국은행 과초금 납부 마감시각 : 15:30

□ 소속국 ⇔ 총괄국

1) 과초금 납부

가. 총괄국 및 소속국

① 소속국은 납부 당일 11:30 까지 총괄국으로 현금운송 위탁사항 통보

② 총괄국은 과초 대상국을 운송 당일 12:00 까지 용역업체에 통보

※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요구

③ 과초금 발생 소속국은 납부 당일 15:00 까지 인도준비 완료

④ 용역업체 운송시간은 운송 당일 15:00~18:00 까지로 함

나. 용역업체는 소속국에서 봉인된 상태로 인수하여 총괄국 담당자에게 동일한 상태로 인도하여야 하며, 운송 당일 18:00 이전에 총괄국과 인계인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 우체국 폐국·업무중지 시에는 위 시간외에 현금운송 위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계약시 작성된 요율표를 적용한다.

2) 자금청구

가. 총괄국 및 소속국

① 소속국(총괄국)은 운송 전 영업일 17:30까지 총괄국(모점국)으로 현금운송 위탁사항 통보

② 총괄국(모점국)은 자금 운송 대상국을 운송 전 영업일 18:00까지 용역업체에 통보

※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요구

③ 용역업체 운송시간은 운송 당일 09:00~12:00까지로 한다.

□ 총괄국 ⇔ 점외 365 자동화기기

가. 총괄국↔용역업체

① 운영자금 인수 및 마감금액 반납(통상 1일 2회 우체국 방문)

② 위탁업무 처리시간은 운송 당일 09:00~17:00까지로 한다.

③ 업무 수행은 원칙적으로 토, 공휴일 및 국경일을 제외하며, 우체국의 영

업일로 정하고, 기타 추가 현송 장전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④ 용역업체는 현금수송업무 수행 중 CCTV 화면상태 및 녹화여부 이상유무 점검 후 이상 발견 시 즉시 총괄국으로 연락한다.

나. 용역업체의 제공업무 범위

- ① 자동화기기 운영자금의 현금수송 업무
- ② 자동화기기 운영자금 관리업무(시재마감결과 확인 등의 현금대사 업무 포함)
- ③ 대상물의 일반관리업무(현금장전, CCTV 녹화상태관리, 명세표교체 등)
- ④ 자동화기기의 운영자금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환경 및 관리 업무

다. 용역업체는 용역직원에게 자동화기기 운영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7. 현금의 인계인수

가. 현금의 인계인수는 해당 우체국과 용역업체 쌍방 책임자가 입회하여 확인한 후 봉인하고 인계인수 서류에 상호 날인하여 행한다.

나. 현금의 인계인수는 위탁하는 현금의 총액으로 하되, 내용물의 확인은 작은 묶음의 수량까지로 한다.

다. 「해당우체국에서 용역업체로의 현금인계」는 용역업체 책임자가 해당우체국 책임자로부터 현금을 확인하여 수령한 후 소정의 인계인수 서류에 상호 날인하여 교부한 때 완료한 것으로 한다.

라. 우체국 인계책임자는 운송도중 수송용기 임의개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송용기를 봉인한다.

마. 「용역업체에서 해당우체국으로의 현금인계」는 포장된 수송용기상의 봉인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개봉한 다음 현금의 총액을 확인하고 소정의 인계인수 서류에 날인하여 교부한 때 완료한 것으로 한다.

바. 현금운송시 사용되는 수송용기는 용역업체에서 제공하며, 또한 봉인 방법은 각각의 번호가 기재된 1회용 씰(Seal)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사. 용역업체는 자과초금 운송 시 해당우체국에 도착예정시간을 미리 유선(전화)으로 통보한다.

아. 점외365코너의 현금 운송은 용역업체가 인계인수서에 사용인감 날인(또는 서명)하고 현송품을 인수하여 우체국이 지정한 점외365코너 자동화기기에 장착하고, 전일 장착한 현금잔액을 우체국으로 인도한다.

자. 용역업체는 해당우체국에서 요구할 때에는 정규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요금(수수료) 적용기준

가. 지폐현송

○ 현송금액 기준

- 기본수수료 적용금액 : 지폐 30억원 이하
- 지폐 30억원 초과시 초과 매 3억원당 5,000원씩 가산

○ 현송물량 기준 (1자루는 지폐대속 30개 기준)

- 기본수수료 적용물량 : 10자루 이하
- 10자루 초과시 초과 매 1자루당 5,000원씩 가산

나. 주화현송

○ 기본수수료 적용 : 300kg 이하

○ 300kg 초과시 매 100kg당 10,000원씩 가산

다. 지폐와 주화 병행 운송시

○ 주화 100kg 까지 : 가산요금 없음

○ 주화 100kg 초과시 매 100kg당 10,000원씩 가산

라. 기타사항

○ 동일 현송에 대해 금액(30억원) 및 물량(10자루) 기준을 모두 초과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많은 것을 적용

○ 1회 현송 중량한도 : 650kg

○ 모점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한국은행 본·지점으로 운송시에도 모점국 해당 구간별 요금을 적용

마. 과초납부 이외의 자금청구에 따른 위탁운송수수료

- 소속국에서 총괄국으로, 총괄국(또는 모점국)에서 모점국(또는 한국은행)으로 자금을 청구하여 운송하였을 경우에는 과초금 운송구간별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9. 현금운송 안전확보

- 가. 용역업체는 운송업무를 담당할 책임자 및 담당직원의 신분과 임무 부여 사항을 증명하는 소정의 서류(호송대행 지시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도록 하며, 우체국은 동 증명서류에 의거 용역업체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책임자 명부를 별도 부여한 ID 및 PASSWORD에 의거 조회하여 현금운송 담당자의 신분과 사진, 현금 인수도에 사용할 인감의 인영을 확인한다.
- 나. 용역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고, 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교체될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홈페이지를 개정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현금수송에 필요한 특별한 장비를 갖추고 용역업체의 본부와 항상 연락이 가능한 무선통신 시설을 장치한 현금운송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운송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 라. 용역업체는 현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각종 방범장비를 갖춘 호송원으로 하여금 현금을 경비하게 하여야 하며 **1팀당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2인으로 운송시에는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수수료를 차감 지급한다.
- ※ 차감액 : 2인 운송수수료*호송원 인건비율(21.93%)*페널티(110%)
- 마. 현금운송 차량에는 현금의 경비를 위한 호송원 이외의 자가 탑승할 수 없다. 다만, 모점국에서 지정하는 자의 동승은 허락할 수 있다.
- 바. 용역업체는 운송도중 사고로 인하여 현금운송에 지장이 있을 때는 즉시 해당 우체국으로 통보하고 현금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 차량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대체 차량으로 운송한다.
 - ② 도로장애 등으로 차량에 의한 운송이 불가능할 때는 인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까운 우체국에 운송한 후, 해당 우체국의 지시에 따른다.
 - ③ 위 ①, ②의 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고복구를 기다려 운송한다.

사. 용역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업체인 동시에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업체로서 위탁운송지역에서 현금운송용역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아. 우체국의 원활한 현금 위탁운송을 위하여 용역회사는 직영차량을 28대 이상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지역 소재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등록된 호송직원(정규 직원)을 84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로 한다.

10. 손해배상

- 가. 용역업체는 현금운송업무 대행과정에서 사고 및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그 손해금액과 부대비용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내우외환과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나. 현금운송 위탁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시간 미 준수로 현금을 총괄국(모점국)이나 한국은행에 불입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현금운송 예정금액 또는 위탁금액에 대하여 한국은행 콜금리를 적용, 운용이자를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 다. 점외365코너 자동화기기의 경우 원인불명 손해금 발생 시 용역업체는 ‘금융자동화코너 무인경비업체’와 쌍방간 원만한 협의 후 우체국(우정청)측에 손해금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 원인불명 손해금이라 함은 양 용역업체에서 기기 열쇠를 각각 관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금 부족금을 지칭함
- 라. 용역업체는 위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로서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 수령권을 발주처에 양도하여야 한다.
- 마. 용역업체는 용역원의 용역업무 중 발생할지 모르는 상해 등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1. 계약의 해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결행하였을 때
- 다.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월 3회 이상 한국은행 납부를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켰을 때
- 라. 제도의 변경 등 우체국의 사정이 있는 때

12. 현금운송 대행수수료

- 가. 자·과초금 위탁운송수수료는 **요일표상에 정해진 바에 따르고, 점외 365코너 현금 위탁운송수수료는 코너별 월 계약단가에 따른다.**
단, 점외365코너 위탁운송수수료의 경우 용역료 산정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고(1달은 30일로 정함), 기타 추가 현송사항 발생 시 추가 운송료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 나. 용역업체는 매월 발생한 현금운송 대행수수료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익월 5일까지 우정청으로 청구한다.
- 다. 우정청은 수수료 발생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청구를 받은 달 25일 까지 우체국에 개설된 용역업체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 라. 수수료의 환수: 용역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과오청구 등으로 과다 지급되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용역업체는 수수료 환수요구에 응해야 한다.

13. 기밀유지

- 가. 용역업체(용역회사 및 용역원 포함)는 계약기간을 막론하고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우체국의 기밀사항을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이용 또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용역업체(용역회사 및 용역원 포함)가 기밀을 누설하여 우체국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우체국의 청구에 따라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

14. 계약변경

- 가. 계약당사자의 사유로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로의 합의하에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나. 위탁운송 대상의 폐국, 신설 및 장소 이전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상의 편의를 위해 문서로서 계약 변경 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단, 용역수수료가 변경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재체결하여야 한다.

15. 자료요구

- 가. 용역업체는 현송품 운송업무에 필요한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나. 우정청(우체국) 또는 우정청(우체국)이 지정하는 현금운송확인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체는 현송품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6.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정청(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7. 계약기간

- 가. 계약기간은 **2017. 1. 1. ~ 2018. 12. 31. (2년)**으로 한다.
- 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위 11번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다음 용역업체가 위탁운송을 개시할 때까지 최소 2개월간 위탁운송을 책임질 의무를 갖는다. 이를 불이행시는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된다.

18. 타법령의 준용 등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는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조달청 등 관련법을 준용합니다.

- **붙임** 1. 위탁운송대상국 세부내역(총괄국, 소속국, 점외 365코너) 1부.
2. 운송 발생현황(총괄국, 소속국, 점외 365코너) 1부.